

의안번호	2218343
의 퇴 인	안태준 의원
회 답 일	2026. 6. 24.
추계번호	26C21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를 즐기고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 획의 수립)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건강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주거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이·여가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11. 재원조달방안 12.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기 수립 중인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존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인 계획의 포함은 기존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 내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규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실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실시할 지원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